



## 19. 피고인

### 제4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 당사자 능력

자연인	O - 언제나 X - 사망
법인	O - 처벌규정 X - 소멸 → 판) 청산, 소송 중 - 소멸 X
X	공소기각 결정

#### • 소송능력

X	공판절차 정지
---	---------

## 20. 변호인

- 선정 + 실질조력 조치
-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 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 사람에게도 보장
  - 헌법 제12조 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의 구속에 포함 (출입국관리사무소)

## 23. 소송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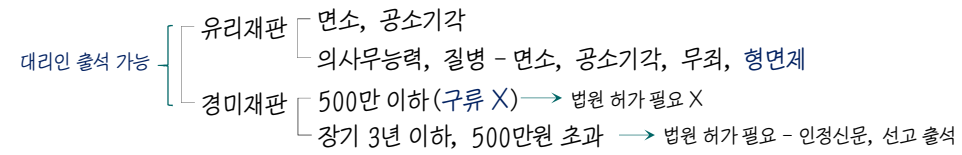
효과 [최초 - 2주]  
2회 이후 - 5일] ⇨ 송달 간주

예외-판) [변론종결전 허가  
방어권, 변호권 본질 침해 X]  
↓  
(방어권, 변호권 본질 침해 0, 변론종결 전 허가 X  
⇨ 조서 증거능력 X)



## 24. 공판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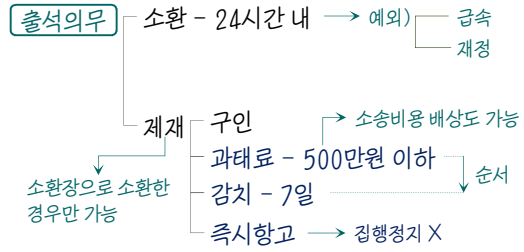
---



즉결 - 벌금, 과료 (구류 X)

## 27. 공판기일의 절차

### • 증인의 의무



### • 증인의 권리

**증언거부권** 의의 - 출석 자체 거부 X ↔ 증언거부권 (공무상 비밀)

## 29. 증거와 증명의 기본원칙

[ 고의  
양심 ]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

## 29. 증거와 증명의 기본원칙

•

구분	내용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범죄의 일시, 장소 교사법에 있어 교사의 사실 위드마크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 음주정도 알리바이의 부존재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b>교사법에 있어서의 교사사실</b> 횡령죄에서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 뇌물죄에 있어 수뢰액 범죄단체의 구성, 가입행위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의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위) 목적 공모나 모의의 사실 불법영득의사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의 부존재	정당방위의 요건사실 피해자승낙의 부존재
처벌조건	친족상도례에 있어 일정한 친족관계의 부존재 사전수뢰죄에서 피의자가 공무원이나 종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 파산의 확정 등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이 되는 사실	누범전과, 상습법에서 상습성 중지미수(자의성)
그 외	외국법(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할 경우 간접사실

## 30.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일부 진술 - 진술조서 중 일부만 믿고 다른 부분 믿지 않는 것도 가능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X →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유죄 인정 불가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압수물 (피해품)의 존재만으로 유죄의 증거 X

어느 것을 믿든 자유심증





### 30.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증거능력 O	위법수집증거 O ⇨ 증거능력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임의성이 있는 경우)</li> <li>-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li> <li>-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li> <li>-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li> <li>- 비변호인경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임의성 인정)</li> <li>- 변호인경전 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li> <li>- 무인카메라에 의한 속도위반차량 단속</li> <li>-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li> <li>- 교도관이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한 사례</li> <li>- 긴급체포 후 석방 30일 내 법원 통지 않은 경우, 긴급체포 당시 작성 조서</li> <li>- 법정대리인 등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혈액을 임의제출한 사례</li> <li>-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li> <li>- 원격지(외국 포함)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방법의 전자정보 압수수색</li> <li>- 음주운전으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차량의 열쇠를 병행 중 또는 병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 압수한 경우</li> <li>-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사례</li> <li>- 시청공무원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li> <li>- 지문채취 후 대상물 압수한 경우 그 지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경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경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 절차에서 위 경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경전이 허용된 경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li> <li>-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li> <li>-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li> <li>-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물건을 긴급 압수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압수물</li> <li>-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동의하여도 증거능력 X)</li> <li>- 변호인경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li> <li>-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li> <li>-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li> <li>-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참고인 진술</li> <li>- 제척사유가 있는 특약인이 특약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li> <li>-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li> <li>- 영장없이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li> <li>-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에 필수 정보를 입수하여 통제배달을 위해) 특정한 수출입물종을 개봉·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정유를 취득한 행위</li> <li>-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li> <li>-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li> <li>-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례</li> <li>- 압수영장에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하고 압수장소에 현존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li> <li>-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li> <li>-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여 집행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li> <li>- 대화 참여자 아닌자가 타인간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사례</li> <li>- 제3자가 일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li> <li>- 영장에 압수대상으로 'OOO일체' 등으로 기재된 일반영장</li> <li>-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li> </ul>
<p>*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뇌물공여자 조사한 사례 (위 법수집증거는 아니나 특신상황이 없어서 증거능력 X)</p>	



### 30.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

자백

↓  
모든  
자백

### 30.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 인정 v 임의성 부정 판례 비교

임의성 인정	임의성 부정
<p>①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p> <p>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을 송치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p> <p>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p> <p>④ 사법경찰관아...</p>	<p>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고 이어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양심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기제가 있으나, 경찰에 송치되자마자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다.</p> <p>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라든가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p> <p>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p> <p>④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깨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p> <p>⑤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법계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p> <p>⑥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로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p> <p>⑦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p> <p>⑧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p> <p>⑨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p> <p>⑩ 구속영장 없이 13여일 간 불법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깨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p> <p>⑪ 피의자신문에...</p>

## 31. 전문법칙

- ①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오증사실 자체이다.
- ③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 ④ 검증조서에 제311조가 적용된다.  
(제312조나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대체물이 아니다.

### 31. 전문법칙

#### •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예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예
①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① 경험사실을 직접 진술 ⇨ 원본증거
② 진술서	㉠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한 법정증언
③ 진술조서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④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 범행목적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⑤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사진)	㉣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 진실성에 관한 부분	㉤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
⑦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 (제311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②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⑧ 횡령죄에서 변호사의 의견서	③ 원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 B가 C를 깨안은 행동이 폭행인지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A가 법정에서 “B는 C에게 나쁜 놈이라고 격노에 찬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 피고인 B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A가 “평소 B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 (제313조가 아니라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 진술 당시 진술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진술
	④ 비진술증거
	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부도수표 (사본)
	⑥ 무고죄의 고소장
	⑦ 협박죄의 협박을 위해 사용된 말, 협박편지
	⑧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을 위해 사용된 말, 편지, 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유인물
	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문자 전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사진)
	⇨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⑩ 사기죄의 기망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 B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C가 훔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 甲이 공판정에서 “乙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함
	⑬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 (B)가 사례비 2천만원 추기로 상의하였다”는 B의 증언
	⑭ 국가기밀 탐지·수집 사건에서 국가기밀 물건
	⑮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  
(개연성 있다는 정도로 증명 X)
- 314조, 316조 해석 동일

↑  
특신상황



- 외국수사기관 (FBI 등)  
조서에서 적용
- 제314조

**의의** 제312조, 제313조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출석 X ⇨ 증거능력 부여



Tip) 공범의 사경 피신 정리

- ① 312조 3항 적용
- ② 공범이 아닌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 필요
- ③ 314조 적용 안됨





## 31. 전문법칙

---

- 재전문

- 전문진술 기재 서류 - 제312조~제314조, 제316조 ⇨ 증거능력 0
- 재전문, 재전문 진술 기재 서류 - 제312조 ~제316조 적용해도 증거능력 X → 동의하면 증거능력 0
-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



의 의

기재사항

서명·날인

양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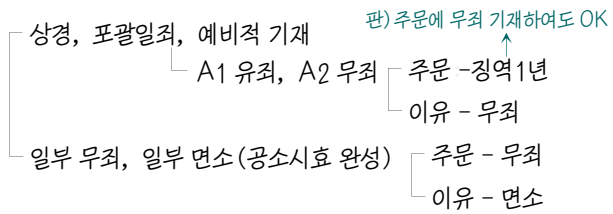
기 타

## 35. 중국재판

### 양형

- ㉠ 법원 재량
- ㉡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
  -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유로 상고 불가
- ㉢ 항소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1심 양형 존중
  - ↳ 항소심에서 1심과 별 차이 없는 형 선고 자제 바람직
- ㉣ 상고심은 항소심 양형 존중
  - ↳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이 다소 바람직 하지 않아도 위법 X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라 주장  
↳ 판단 X  
(위법성, 책임) 조각 - 구성요건 X [알리바이 X  
고의 X



	①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관할의 <b>경합</b> )

• **면소판결** → 면소판결시 몰수 선고 불가

면소판결 (제326조)	① <b>확정판결</b> 이 있을 때	
	② <b>사면</b> 이 있을 때	
	③ <b>공소</b> 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b>폐지</b> 되었을 때	→ 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 위헌 ⇨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 (폐지) ⇨ 위계간음 행위 면소판결 대상



		포기	취하
고유상소권자	검사	○	○
	피고인	(법정대리인 有 ⇨ 동의필요) (사형, 무기 -X)	(법정대리인 有 ⇨ 동의필요)
법정대리인, 상소대리권자		X	○ (피고인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동의 불가시  
⇨ 동의 불필요

- ※ 동의 X ⇨ 효력 X
- ※ 포기권자 ≠ 취하권자
- ※ 동의 ⇨ 구술로도 가능, 명시적

상소권 회복 인정 0	상소권 회복 인정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적법 공시송달, 판결선고 인지 X</li> <li>②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 X, 위법한 공시송달</li> <li>③ 교도소장 결정정보 수령 1주일 후 전달</li> <li>④ 피고인 출석 ⇨ 선고기일 불출석 ⇨ 소속법 공시송달, 불출석, 선고 사실 모른 채 상소기간 도과</li> <li>⑤ 교도소 수감 중, 이외 장소 송달</li> <li>⑥ 법원직원이 정식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변호인이 상소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li> <li>② 선고 잘못들은 경우</li> <li>③ 교도소 담당 직원이 편의 X</li> <li>④ 거주지 변경 신고 X</li> <li>⑤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받지 못한 경우</li> <li>⑦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 X</li> <li>⑧ 공동피고인의 기망</li> </ul>

**적용X**

- ③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파기 된 경우,  
환송 전 후
  - ↳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작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작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다른 사건 (경합범)이 병합된 경우
- ⑤ 상고심 정정, 소송비용, 피해자 환부, 신상정보 고지 누락 정정



불이익 O	불이익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형 그대로 ⇨ 위치추적 장치 기간 증가 (추가)</li> <li>② 주형 그대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가</li> <li>③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위치추적장치 5년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위치추적 장치 20년</li> <li>② 징역 15년, 위치추적장치 5년 ⇨ 징역 9년, 위치추적장치 6년, 공개명령 5년</li> <li>③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가</li> <li>④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추징 18만원 ⇨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 18만원, 취업제한 5년(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없더라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됨)</li> <li>⑤ 신상정보 고지 누락 정정</li> </ul>





↳ 배우자가 함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하여야 함  
함소한, 상대방



### 37. 상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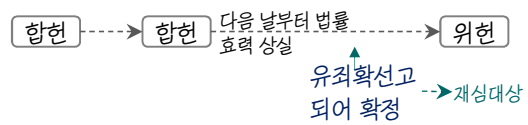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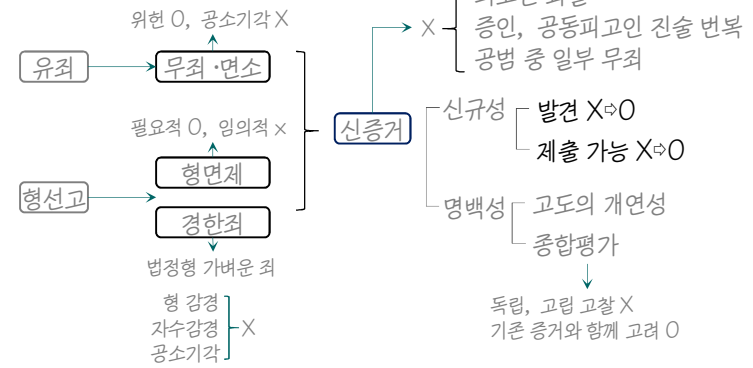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있는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선에게 통지 후 선임된 사선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없음

국선번호인 선정 X,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국선번호인 선정 ⇨ 별도의 소송기록 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이유 기회 부여 (바로 항소기각 결정 X)
국선번호인 선정 X,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 사선번호인 선정	사선번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부여
국선번호인 선정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새로운 국선 선정 ⇨ 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부여
국선 선정 후 다른 사건 병합	병합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

# 38. 비상구제절차

## • 신규증거





## 38. 비상구제절차

---

- 법률 폐지, 위헌



•

비상상고 X	비상상고 O



즉결심판 실효 - 정식재판 확정시 → 재판이 있을 때 O, 정식재판청구시 X



### 39. 특별형사절차

→ 사실심 선고시 기준

- ↳ 2심 선고시 미성년, 부정기형 선고 때 ⇨ 3심 성년 부정기형 적법
- ↳ 3심에서 '2심 정기형 선고 위법을 이유'로 파기자판 ⇨ 정기형 선고

자격에 관한 법령 [ 형 집행 종료/면제  
 형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 ] ⇨ 장래를 향하여 형 선고 X 간주  
 ↓  
 선고유예/집행유예제외한구법 ⇨ 위헌      예외)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실효,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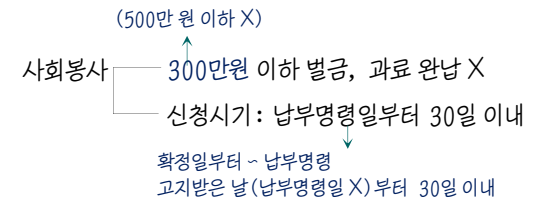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가능 → 유죄 판결과 동시에만 가능



## 40. 집행

- 발부: 검사 → (법원 X, 법관 X)
-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
-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 (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 구속사유(70조), 이유고지(72) 준용X
  - 사건 제시 필요 - 예외) 급속을 요하는 때
    -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구인의 경우도 제시 필요
    - 예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 00. 부록

- 음주측정거부 0
  - 적법한 보호조치 대상자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측정 요구
  - 운전 종료 후, 2시간 경과하여 집에서 측정 요구
  - 음주감지기 거부
  - 음주측정 불응 -> 스스로 혈액채취 요구

## 02 강제 채뇨

- 보충성 → 최후수단
- 방법
  - 숙련된 의료인, 의료장비와 시설
  - 피해자의 고통감 최소화 방법
- 감정에 필요한 처분 or 압수수색

방법	채뇨	병원유치
압수수색	압수명장	별도명장 X (필요한 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허가장	감정유치장



-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 지방경찰청 검사장·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7)일 이내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 원칙.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7)일이 넘는 기간 정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안내장을 포함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 - 7일내 항고